

[붙임1]

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

1. 개정사유

- 설계엔지니어링 부문의 우수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
- 계약시스템 명칭 변경 반영
- 협력업체운영심의회 생략 가능 경우 추가 등 협력업체 모집 시행 및 운영에 따른 내용 일부 보완
- 신규 등록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업체 등록 거절시 이의제기 가능 기간 명시
- 우리회사 정보기술 협력분야의 발주업무와 무관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를 협력 분야 자격요건에서 제외

2. 주요 개정내용

- 설계엔지니어링 부문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보유인력 평가는 재직기간 1년 이상, 사업수행실적 평가는 도급인 경우로 한정
- 계약시스템 명칭을 구매관리시스템(P-manager)에서 계약관리시스템으로 변경
- 협력업체 모집 시행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일부 보완
 - 협력업체운영심의회 생략 가능 경우를 제8조(심의사항)과 일치
 - 불가피한 경우의 협력약정 해지 관련 참조 조항 오류 정정(참조조항 : 제5항→ 제6항)
- 신규 업체 등록이 거절된 업체에 15일의 이의제기 가능 기간 부여 명시
- 정보기술 협력분야의 자격요건 중 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는 정보통신부문의 정보관리 분야로 한정

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4조(용어의 정의) (생 략) 제1호 내지 제11호 (생 략) 12. “ 구매관리시스템(P-manager) ”이란 회사의 계약(기성포함) 및 협력업체 관리를 위해 활용하는 정보화 시스템을 말한다.	제4조(용어의 정의) (현행과 같음) 제1호 내지 제11호 (현행과 같음) 12. “ 계약관리시스템 ”이란 회사의 계약(기성포함) 및 협력업체 관리를 위해 활용하는 정보화 시스템을 말한다.
제19조(협력업체의 선정) 제①항 내지 제⑤항 (생 략) ⑥ 주관부서장은 선정 여부가 결정된 후 15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모든 업체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등록이 거절된 업체에게는 통보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. ⑦ (생 략)	제19조(협력업체의 선정) 제①항 내지 제⑤항 (현행과 같음) ⑥ 주관부서장은 선정 여부가 결정된 후 15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모든 업체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등록이 거절된 업체에게는 통보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하며, 15일간의 이의제기 가능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. ⑦ (현행 제⑦ 항과 같음)
제20조(협력약정체결, 등록 및 유효기간) ① (생 략) ② 주관부서장은 협력약정 체결 사실을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협력약정을 체결한 업체를 구매관리시스템(P-manager) 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제③항 내지 제⑧항 (생 략)	제20조(협력약정체결, 등록 및 유효기간) ① (현행 제① 항과 같음) ② 주관부서장은 협력약정 체결 사실을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협력약정을 체결한 업체를 계약관리시스템 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제③항 내지 제⑧항 (현행과 같음)
제27조(협력약정의 정지 및 해지) ① 주관부서장은 협력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 본부장의	제27조(협력약정의 정지 및 해지) ① 주관부서장은 협력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 본부장의

현 행	개 정
승인을 받아 정지를 업체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며, 운영심의회 심의 및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협력약정을 해지한다. 다만, 1호, 2호, 16호의 경우에는 운영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 해지 이후에는 각 호에 따른 제재사유별 재등록제한 기간 동안 해당 업체에 등록신청을 제한하여야 하며, 제5호 제13호, 제14호의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중할 경우 영구제한을 할 수 있다. 제1호 내지 제18호 (생략) 제②항 내지 제⑤항 (생략) ⑥ 주관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협력약정을 정지한 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, 그 절차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. ⑦ (생 략) ⑧ 회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유 이외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심의회에 회부, 심의하여 협력약정 유효기간 만료 전에 협력업체에 협력약정 해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절차는 제5항에 따른다. ⑨ (생 략) ⑩ 협력약정의 정지, 해지, 재평가 및 신규 등록신청 부적격에 따른 통보 시에는 지정일로부터 7일전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 제28조(협력약정 해지 후 조치사항) 주관부서장은 협력약정이 해지된 업체의 협력약정 해지사유 및 해지일을 구매관리시스템(P-manager)에 등록하여야 한다.	승인을 받아 정지를 업체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며, 운영심의회 심의 및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협력약정을 해지한다. 다만, 1호, 2호, 16호, 18호의 경우에는 운영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 해지 이후에는 각 호에 따른 제재사유별 재등록제한 기간 동안 해당 업체에 등록신청을 제한하여야 하며, 제5호 제13호, 제14호의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중할 경우 영구제한을 할 수 있다. 제1호 내지 제18호 (현행과 같음) 제②항 내지 제⑤항 (현행과 같음) ⑥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협력약정을 정지한 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, 그 절차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. ⑦ (현행 제⑦ 항과 같음) ⑧ 제1항에서 규정한 사유 이외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심의회에 회부, 심의하여 협력약정 유효기간 만료 전에 협력업체에 협력약정 해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절차는 제6항에 따른다. ⑨ (현행 제⑨ 항과 같음) ⑩ 협력약정의 정지, 해지 및 재평가 부적격에 따른 통보 시에는 지정일로부터 7일전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 제28조(협력약정 해지 후 조치사항) 주관부서장은 협력약정이 해지된 업체의 협력약정 해지사유 및 해지일을 계약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
부칙	

현 행	개 정
1. (시행일)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2. (경과조치) 이 절차 개정시행일 현재 결재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절차에 따른다.	
<별표1> 협력분야 및 소관부서 (별첨1)	<별표1> 협력분야 및 소관부서 (별첨1)
<별표2> 업체평가기준 (별첨2)	<별표2> 업체평가기준 (별첨2)

(별첨1) (현 행)

별표 1

협력분야 및 소관부서

1. 설계엔지니어링 부문

기술분야	활용분야	협력분야	자격요건	소관부서
품 질	공통	품질검사	- 기계부문의 용접분야, 건설부문의 품질시험 분야, 산업부문의 생산관리분야, 원자력부문의 비파괴 검사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	품질안전환경 담당부서
사업관리	공통	건설사업관리	- 건설사업관리인력(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고급기술자 1인 이상) 보유자	건설사업관리 담당부서
원 자 력	원자력	원자력발전	- 원자력부문의 원자력·방사선 관리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	원자력발전 담당부서
기 계	플랜트, 원자력, 원자로	기계설계	-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분야 또는 설비부문의 설비분야 중 1개 이상 분야에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	기계설계 담당부서
	플랜트	공기조화 및 냉난방 설계	- 설비 부분의 설비분야 또는 - 기술사법에 의한 기계분야의 공조냉동기계, 건설분야의 건축기계설비 중 1개 이상 분야에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	기계설계 담당부서
	플랜트, 원자력	소방설비	- 산업부문의 소방방재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자	기계설계 담당부서
배 관	플랜트, 원자력	배관설계	-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분야 및 설비부문의 설비분야 중 1개 이상 분야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사업자	배관설계 담당부서
전 기	플랜트, 원자력	전기설계	- 전기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전력기술 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설계업 (종합 또는 전문1종)자	전기설계 담당부서
계 측	플랜트, 원자력	계측제어	- 전기부문의 전기전자응용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	계측제어 담당부서
	원자로	원전 계측제어	- 전기부문의 전기전자응용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	계측제어 담당부서
건 축	플랜트, 원자력	건축설계	-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축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자 또는 -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필증을 보유한 자	건축 담당부서

기술분야	활용분야	협력분야	자격요건	소관부서
토 목	플랜트, 원자력	토목구조	- 건설부문의 구조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	토목기술 담당부서
		육상측량	- 건설부문의 측량·지적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측량,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자	
		수로측량	- 측량,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한 수로사업자	
		도로 및 공항	- 건설부문의 도로 및 공항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	
		토질 및 기초	- 건설부문의 토질·지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	
		지질 및 지반	- 건설부문의 토질·지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	
		항만 및 해안	- 건설부문의 항만 및 해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	
	플랜트	상하수도	- 건설부문의 상하수도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	
환 경	플랜트	환경현황조사	- 환경부문의 대기관리, 수질관리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분야 중 1개 이상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자	환경기술 담당부서
		해양	- 해양·수산부문의 해양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	
		환경 및 화학설비설계	- 환경부문의 대기관리, 수질관리, 소음·진동, 폐기물 처리분야 또는 화학부문의 화공분야 중 1개 이상의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	
정 보	공통	정보기술	- <u>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 및 정보관리분야 중 1개 이상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이거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</u>	정보기술 담당부서

비 고

1. 자격요건 중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해당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신고를 필한 업체를 말하며,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동일 기술범위에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를 포함.

2. - 3. (생 략)

(별첨1) (개 정)

별표 1

협력분야 및 소관부서

1. 설계엔지니어링 부문

기술분야	활용분야	협력분야	자격요건	소관부서
품 질	공통	품질검사	- 기계부문의 용접분야, 건설부문의 품질시험 분야, 산업부문의 생산관리분야, 원자력부문의 비파괴 검사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	품질안전환경 담당부서
사업관리	공통	건설사업관리	- 건설사업관리인력(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고급기술자 1인 이상) 보유자	건설사업관리 담당부서
원 자 력	원자력	원자력발전	- 원자력부문의 원자력·방사선 관리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	원자력발전 담당부서
기 계	플랜트, 원자력, 원자로	기계설계	-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분야 또는 설비부문의 설비분야 중 1개 이상 분야에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	기계설계 담당부서
	플랜트	공기조화 및 냉난방 설계	- 설비 부분의 설비분야 또는 - 기술사법에 의한 기계분야의 공조냉동기계, 건설분야의 건축기계설비 중 1개 이상 분야에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	기계설계 담당부서
	플랜트, 원자력	소방설비	- 산업부문의 소방방재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자	기계설계 담당부서
배 관	플랜트, 원자력	배관설계	-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분야 및 설비부문의 설비분야 중 1개 이상 분야에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	배관설계 담당부서
전 기	플랜트, 원자력	전기설계	- 전기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설계업 (종합 또는 전문1종)자	전기설계 담당부서
계 측	플랜트, 원자력	계측제어	- 전기부문의 전기전자응용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	계측제어 담당부서
	원자로	원전 계측제어	- 전기부문의 전기전자응용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	계측제어 담당부서
건 축	플랜트, 원자력	건축설계	-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축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자 또는 -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필증을 보유한 자	건축 담당부서

기술분야	활용분야	협력분야	자격요건	소관부서
토 목	플랜트, 원자력	토목구조	- 건설부문의 구조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	토목기술 담당부서
		육상측량	- 건설부문의 측량·지적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측량,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자	
		수로측량	- 측량,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한 수로사업자	
		도로 및 공항	- 건설부문의 도로 및 공항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	
		토질 및 기초	- 건설부문의 토질·지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	
		지질 및 지반	- 건설부문의 토질·지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	
		항만 및 해안	- 건설부문의 항만 및 해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	
	플랜트	상하수도	- 건설부문의 상하수도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	
환 경	플랜트	환경현황조사	- 환경부문의 대기관리, 수질관리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분야 중 1개 이상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자	환경기술 담당부서
		해양	- 해양·수산부문의 해양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	
		환경 및 화학설비설계	- 환경부문의 대기관리, 수질관리, 소음·진동, 폐기물 처리분야 또는 화학부문의 화공분야 중 1개 이상의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	
정 보	공통	정보기술	- <u>정보통신부문의 정보관리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이거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</u>	정보기술 담당부서

비 고

1. 자격요건 중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해당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신고를 필한 업체를 말하며,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동일 기술범위에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를 포함.

2. - 3. (현행과 같음)

(별첨2) (현 행)

별표 2

업체평가기준

I. 설계엔지니어링 부문

1.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

(생략)

2.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

가. - 나. (생략)

다. 인력 보유상태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.

①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의 비율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.

구 분	150%이상	150%미만 120%이상	120%미만 100%이상	100%미만 70%이상	70%미만 50%이상	50%미만
평가점수	35	32	29	26	23	0

②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.

- 산식 = 보유인력 계량점수 ÷ 표준인력 계량점수 × 100 (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)

- 보유인력 및 표준인력 계량점수 = ∑(등급별 인원 × 등급별 계수)

< 예 시 >

구 분	계 수	표준인력	보유인력	인력보유비율 및 평점
특급기술자	10	1	1	- 인력보유비율 = 106.67% (= 64 ÷ 60 × 100) - 평가점수 = 29점
고급기술자	8	2	2	
중급기술자	6	3	3	
초급기술자	4	4	5	
계량점수	-	60	64	

③ 협력분야별 표준인력(등급, 계수, 소요인력)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결정한다.

④ 동일한 업체가 동일한 활용분야내에 2개 이상의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등록신청을 할 경우 해당 업체의 동일 기술자는 각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평가받을 수 없다.

라. 사업수행실적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.

① 최근 5년간 해당 협력분야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 합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.

< 예 시 >

구 분	평 점				
	5건이상	5건미만 ~ 4건이상	4건미만 ~ 3건이상	3건미만 ~ 2건이상	2건 미만
건수기준	7.5	6.8	6.1	5.4	4.7
금액기준	10억이상	10억미만 ~7억이상	7억미만 ~5억이상	5억미만 ~3억이상	3억미만
	7.5	6.8	6.1	5.4	4.7

② 용역수행실적(건수 및 금액)은 동일·유사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.

- 건수(금액) = $\sum(\text{건수(금액)} \times \text{역무보정계수})$
- 역무보정계수 : 동일역무 1.0, 유사역무 0.7
- 계산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
③ 협력분야별 건수, 금액, 보정계수 및 동일/유사역무의 구분기준 등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결정한다. 다만, 평점은 조정할 수 없다.

마. - 사. (생략)

II. - III. (생략)

(별첨2) (개 정)

별표 2

업체평가기준

I. 설계엔지니어링 부문

1.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

(현행과 같음)

2.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

가. - 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인력 보유상태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.

①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의 비율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.

구 분	150%이상	150%미만 120%이상	120%미만 100%이상	100%미만 70%이상	70%미만 50%이상	50%미만
평가점수	35	32	29	26	23	0

②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.

- 산 식 = 보유인력 계량점수 ÷ 표준인력 계량점수 × 100 (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)

- 보유인력 및 표준인력 계량점수 = ∑(등급별 인원 X 등급별 계수)

< 예 시 >

구 분	계 수	표준인력	보유인력	인력보유비율 및 평점
특급기술자	10	1	1	- 인력보유비율 = 106.67% (= 64 ÷ 60 × 100) - 평가점수 = 29점
고급기술자	8	2	2	
중급기술자	6	3	3	
초급기술자	4	4	5	
계량점수	-	60	64	

③ 협력분야별 표준인력(등급, 계수, 소요인력)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결정한다.

④ 동일한 업체가 동일한 활용분야내에 2개 이상의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등록신청을 할 경우 해당 업체의 동일 기술자는 각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평가받을 수 없다.

⑤ 보유인력은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.

라. 사업수행실적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.

① 최근 5년간 해당 협력분야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 합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.

< 예 시 >

구 분	평 점				
건수기준	5건이상	5건미만 ~ 4건이상	4건미만 ~ 3건이상	3건미만 ~ 2건이상	2건 미만
	7.5	6.8	6.1	5.4	4.7
금액기준	10억이상	10억미만 ~7억이상	7억미만 ~5억이상	5억미만 ~3억이상	3억미만
	7.5	6.8	6.1	5.4	4.7

② 용역수행실적(건수 및 금액)은 동일·유사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.

- 건수(금액) = $\Sigma(\text{건수(금액)} \times \text{역무보정계수})$
- 역무보정계수 : 동일역무 1.0, 유사역무 0.7
- 계산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
③ 협력분야별 건수, 금액, 보정계수 및 동일/유사역무의 구분기준 등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결정한다. 다만, 평점은 조정할 수 없다.

④ 사업수행실적은 도급수행실적인 경우에 한한다.

마. - 사. (현행과 같음)

II. - III. (현행과 같음)